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218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선정당사자)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한석영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원고에게 포천시 G 임야 17,455㎡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1. 2. 26. 접수 제8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과 B 사이에 포천시 G 임야 17,455㎡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2.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채무자의 처분행위

1) 채무자 B(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포천시 G 임야 17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2. 10. 위 지분을 자신의 형인 F에게 증여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F이 2021. 1. 6.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1. 2. 8. 위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그 후 채무자 및 F은 2021. 2. 23.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7,25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로부터 계약 당일 2,250만 원을, 2021. 2. 26. 5,000만 원을 각 F 계좌로 송금 받고 2021. 2. 26.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1. 2. 26. 접수 8125호로, 채무자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2. 26. 접수 8126호로 각 피고들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채무자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2. 26. 접수 8126호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A은행에 18,032,535원, I은행에 53,626,810원, J은행에 4,962,740원, K에 44,170,28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L에 대한 해약반환금 66,941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파산선고

채무자는 A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1. 4. 21. 사기 피해 및 실직 등의 사유로 2019. 12. 31.부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21하단10474호로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2. 4. 21.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11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A은행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우정사업정보센터장, M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부인권 행사의 형성적 효과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원상회복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부인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포천시 N 토지 지분을 소유하며 그 곳에 부모 묘소를 모시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산소 이장과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산소 이장 목적 등으로 매입한 것이라면서도 이장 가부 등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계약금 지불 후 불과 3일 만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30%를 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점,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인근에서 피고들의 부모 묘소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채무자 및 F과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공유자 중 1인인 F에게 전액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선 정 자 명 단

- 1. D
- 2. E
- 끝.

